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혈관질환 정의 구체화 및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등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20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	---

1. 심혈관질환 정의 구체화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등에 대한 국민
건강증진기금 지원(안 제2조제1호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4
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13
3.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안 제14조 및 안 제19조의2·제20조의2 신설) ... 16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2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1. 21.
- (3) 회 부 일 : 2026. 1. 22.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등 유사한 입법례와 달리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두 사업 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에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관계법령에 의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2020년 동법 개정 이후 2024년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2항제3호 및 제4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심혈관질환 정의 구체화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등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안 제2조제1호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심혈관질환의 정의를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1호), 심뇌혈관질환 연구·조사통계·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u>심혈관질환</u>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u>심혈관질환</u> 나. (생략) 다. <u>뇌졸중</u> 등 뇌혈관질환 <신설> <신설> <신설>	제2조(정의) ----- -----. 1. ----- <u>심장혈관질환</u> ----- ----- -----. 가. ----- <u>심장혈관질환</u> 나. (현행과 같음) 다. <u>뇌졸중, 뇌동맥류</u> 등----- ----- 라. <u>심부전</u> 마. <u>부정맥</u> 바. <u>판막질환</u>

라. ~ 바. (생략)

2. 3. (생략)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2. (생략)

3.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중개·임상 연구

4. ~ 7. (생략)

③ (생략)

<신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사. ~ 자.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예방·진단·치료·재활-----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집·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발 및 후유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
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생략)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illegible]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첫째,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심장혈관질환에 ‘뇌졸중·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안 제2조제1호).

이는 다양한 세부 심장질환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상의 심장혈관질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것임.

다만, 이들 심장질환은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심장혈관질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행 「심뇌혈관질환법」 제2조제1호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를 비교적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 나. 심장정지
 -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 라. 고혈압
 - 마. 당뇨병
 - 바. 이상지질혈증
 - 사. 삭제 <2022. 6. 10.>

□ 둘째, 심뇌혈관질환 연구·조사통계·예방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208호)」(이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이며(안 제25조제1항제5호),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동 법안과 같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제16208호, 발의일 2026. 1. 21.) >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4. (생략)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u>압</u> 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 12. (생략) ②·③ (생략)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압</u> <u>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u> ----- ----- 6.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이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등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암관리법」 및 「희귀질환관리법」은 각각 의료급여수급자의 암검진 비용 지원 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음.

< 입법례 >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1)제5호에 따른 기금 사용대상인 “질병의 예방·검진·관리를 위한 사업” 중 “질병”에 뇌심혈관질환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같은 항 제12호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도 기금 사용대상 사업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심뇌혈관질환에 심부전·부정맥·심장판막증·심근염·폐고혈압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 등(안 제2조)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이 발의(김윤의원 대표발의, 제16084호, 발의일 2026. 1. 15.)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1)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6. 절주문화 조성 사업

다.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안 제2조와 관련하여서는,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되, 구체적인 질환의 범위를 법률에 나열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수용이 어려움.

-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질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조항 신설은 필요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관련하여서는, 기금의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된 일반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심뇌혈관질환법」 등 개별법에서 기금의 지원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 한편, 안 제8조·제9조에서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질병관리청) 이견 없음.

□ (대한뇌졸중학회) 안 제2조 관련, 세부 질환은 시행규칙에 두는 것이 적절하며, 개정안과 같이 세부 질환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은 타 분야 질환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논의하여야 함.

□ (대한신경외과학회)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뇌동정맥기형, 뇌동정맥루 등 뇌혈관질환”도 포함하도록 수정 필요

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중앙센터”)의 지정기간을 정하고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중앙센터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u>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u>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u> <u>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u>

② <u>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방법</u>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따르지 아니한 경우</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권역·지역센터의 지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법 제13조2) 중앙센터에 대하여서는 그렇지 않음.
- 따라서, 개정안은 중앙센터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중앙센터의 지정 등과 관련한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중앙센터의 지정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므로, 개정안 시행 시 기존 법 제12조제1항3)에 따라 지정되어

-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있는 중앙센터⁴⁾의 지정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할 것임.

< 입법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다. 관계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현행법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 및 취소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추가하는 안 제12조 수용
- ☐ (질병관리청) 이견 없음.

4) 현재 중앙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정되어 있음.

가. 개정안의 내용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안 제19조의2) 및 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20조의2)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생략)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② ----- ----- ----- ----- ----- ----- ----- ----- ----- ----- <u>. 이 경우 심뇌 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행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u>

<u>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u>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제19조의2(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20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의할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처리 제한, 국외 이전,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게 됨.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적 비용이 감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는 약화되는 반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는 등 개정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영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의 구성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6장 삭제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 상호주의 제28조의11 준용규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39조의3 자료의 제출 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 설치 및 구성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4조 처리기간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의2 진술의 원용 제한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 분쟁의 조정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 집단분쟁조정 제50조 조정절차 등 제50조의2 개선의건의 통보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2조 전속관할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4조 소송허가신청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6 삭제 제28조의7 적용범위		

다.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과 상충되어 개정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규정 삭제 필요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5)에 따라 동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의 적용이 배제되는 개인정보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지위, 수범자의 혼란 및 중복 규제 우려 등을 고려하면 개별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필요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사전 예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 (질병관리청) 이견 없음.

문 의 처

02)6788-5509

5)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3. 3. 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삭제 <2023. 3. 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